

1. 개정이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92호, 2021. 7. 7. 공포, 10. 8. 시행)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정책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에 필요한 인력 22명(6급 15명, 7급 5명)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상공인정책관 내부서간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제18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및 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19.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20.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
21.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22.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
23.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4.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
25.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지원
26.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운용
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운영
29.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컨설팅 지원

30.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3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상공인 재기 및 회복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책 수립
· 지원

5. 소상공인 폐업·재기 정책수립 및 지원사업 운영

6. 소상공인 사업전환 정책 총괄

7.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8. 폐업소상공인 구조개선 자금 및 컨설팅 지원

9. 재기지원 민간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

10. 소상공인 폐업·재기 및 구조전환 등의 시책에 관한 사항

1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획 및 집행

1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11조제7항제1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제13호 및 제1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8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

8항제19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

22.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23.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9항에 제29호부터 제3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30.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

3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3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9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 ① 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2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

별표 3 중 총계 “479”를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73”을 “47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65”를 “166”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9”를 “140”으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479”를 “481”로 하고, 일반직 계 “473”을 “475”로 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6”을 “177”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1”을 “132”로 한다.

별표 8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관련) 다음에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을 신설하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 다음에 “총계 19”를 신설하고, 총계 19 다음에 “일반직 계 19”를 신설하며, 일반직 계 19 다음에 “고위공무원단 1”를 신

설하고,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를 신설하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를 삭제하고, 총계 및 일반직 계 “19”를 각각 “7”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3.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신설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 “2”를 “1”로 하며,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다음에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2”를 신설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를 신설한다.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관련)

별표 8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를 신설하고,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 다음에 “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신설하며,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다음에 “총계 1”를 신

설하고,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2”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을 “2”로 하며,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2”를 “1”로 한다.

별표 9 제20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다음에 “총계 1”을 신설하고, 총계 1 다음에 “일반직 계 1”를 신설하며, 총계 및 일반직 계 “1”을 각각 “22”로 하고, 일반직 계 22 다음에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를 신설하며,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시설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 다음에 “5. 제20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를 신설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시설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5 다음에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통계주사보·시설주사보·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7”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⑤ (생 략)	제11조(소상공인정책실)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상공인정책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	⑥ ----- -----.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8.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및</u>
	<u>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19.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u>
	<u>영</u>
<u><신 설></u>	<u>20. 우수점포 발굴 · 지원 및 인</u>
	<u>증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1.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u>
<u><신 설></u>	<u>22.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u>
	<u>개발 및 보급</u>
<u><신 설></u>	<u>23.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u>
	<u>한 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u>
<u><신 설></u>	<u>24.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u>
	<u>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u>
<u><신 설></u>	<u>25.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u>
	<u>로 지원</u>
<u><신 설></u>	<u>26.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u>
	<u>사</u>
<u><신 설></u>	<u>2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u>
	<u>의 운용</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8. (생 략)

⑦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 설>

1. (생 략)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 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3. (생 략)

4.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델의 개발·보급

<신 설>

6.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화 및

28.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의 운영

29.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
컨설팅 지원

30.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3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

32.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
건 개선에 관한 사항

33. (현행 제18호와 같음)

⑦ -----
-----.

1. 소상공인 재기 및 회복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시책 수립·지원

2. (현행 제1호와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소상공인 폐업·재기 정책수
립 및 지원사업 운영

6. 소상공인 사업전환 정책 총

<u>경영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u>	<u>관</u>
<u>7.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u>	<u>7. 소상공인 재기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u>
<u>8.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체계 혁신 지원</u>	<u>8. 폐업소상공인 구조개선 자금 및 컨설팅 지원</u>
<u>9.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u>	<u>9. 재기지원 민간협력사업 발굴 및 운영</u>
<u>10. 소상공인 교육프로그램 운영</u>	<u>10. 소상공인 폐업·재기 및 구조전환 등의 시책에 관한 사항</u>
<u>11. 우수점포 발굴·지원 및 인증에 관한 사항</u>	<u>11.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기획 및 집행</u>
<u>12.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u>	<u>12.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u>
<u>13.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보급</u>	<u><삭 제></u>
<u>14. (생 략)</u>	<u>4. (현행 제14호와 같음)</u>
<u>15.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16. · 17. (생 략)</u>	<u>13. · 14. (현행 제16호 및 제17호와 같음)</u>
<u>18.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u>	<u><삭 제></u>
<u>19.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u>	<u><삭 제></u>

<u>관행의 시정에 관한 사항</u>	
<u>20.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의 판 로 지원</u>	<u><삭 제></u>
<u>21.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태조 사</u>	<u><삭 제></u>
<u>2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의 운용</u>	<u><삭 제></u>
<u>23.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의 운영</u>	<u><삭 제></u>
<u>24.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연수·지도 및 경영 컨설팅 지원</u>	<u><삭 제></u>
<u>25.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u>	<u><삭 제></u>
<u>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지원</u>	<u><삭 제></u>
<u>2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여 건 개선에 관한 사항</u>	<u><삭 제></u>
⑧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⑧ -----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u>19.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 의 운영 및 실태조사</u>	<u><삭 제></u>
20. (생 략)	20.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1. 소상공인의 업종별 점포모 델의 개발·보급</u>

<신 설>

<신 설>

⑨ 지역상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⑩ ~ ⑬ (생 략)

<신 설>

22. 소규모 점포시설의 개선 지원

23. 가맹본부에 대한 수준평가 및 가맹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⑨ -----
-----.

1. ~ 28. (현행과 같음)

29.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인사업의 육성

30. 도·소매업 소상공인 유통 체계 혁신 지원

31.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 지원

32.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제도의 운영 및 실태조사

⑩ ~ ⑬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①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

<u><신 설></u> 제20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 ⑤ (생략) <u><신 설></u>	<u>원은 별표 8과 같다.</u> <u>제19조의3(소상공인손실보상과)</u> ① <u>소상공인손실보상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u> ② <u>소상공인손실보상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u> 제20조(한시정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9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둔다.</u>
--	---

신 · 구 정원 대비표

■ 중소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479</u>	• <u>481</u>	+2
일반직 계	• <u>473</u>	• <u>475</u>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 <u>165</u>	• <u>166</u>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 <u>139</u>	• <u>140</u>	+1

	.	.	.	
	.	.	.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4]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정원표(제15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479	481	+2
일반직 계	473	475	+2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176	177	+1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131	132	+1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8]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중소벤처기업부의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19조제5항)	(제19조제5항,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조제2항 관련)	
1. <u>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u>	<신 설>	1. <u>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u>	+1. 규제자유특구기획단(존속기한: 2022년 5월 20일)
<u>총계</u>	<신 설>	<u>19</u>	+19
<u>일반직 계</u>	<신 설>	<u>19</u>	+19
<u>고위공무원단</u>	<신 설>	<u>1</u>	+1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u>	<신 설>	<u>2</u>	+2

<u>규제자유특구기획단(준속기한: 2022년 5월 20일)</u>	<u>규제자유 특구기획 단(준속기 한: 2022 년 5월 20 일)</u>	<u><삭 제></u>	-규제자 유특구기 획단(준 속기한: 2022년 5 월 20일)
.	.	.	
<u>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u>	<u><신 설></u>	<u>12</u>	+12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u><신 설></u>	<u>1</u>	+1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u>	<u><신 설></u>	<u>2</u>	+2

<u>2</u> <u>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u>	<u><신 설></u>	<u>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u>	+2.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u>총계</u>	<u><신 설></u>	<u>1</u>	+1
<u>일반직 계</u>	<u><신 설></u>	<u>1</u>	+1
.	.	.	
<u>3</u> <u>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u>	<u><신 설></u>	<u>3.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u>	+3. 소상공인손실보상과(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u>총계</u>	<u>19</u>	<u>7</u>	-12
<u>일반직 계</u>	<u>19</u>	<u>7</u>	-12
<u>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원</u>	<u>2</u>	<u>1</u>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전산 사무관 · 통계사무관 · 시설사무 관 · 방송통신사무관 · 환경사무 관 · 의료기술사무관 · 식품위생 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	<u>12</u>	<u>3</u>	-9
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	<u>1</u>	<u>2</u>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 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 보 ·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공업연구사	<u>2</u>	<u>1</u>	-1

[별표 9]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20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총계</u>	<u><신 설></u>	<u>1</u>	+1
<u>일반직 계</u>	<u><신 설></u>	<u>1</u>	+1
•	•	•	
5. 제20조제6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u><신 설></u>	5. 제20조 제6항 관 련 한시 정원(존 속기한: 2 022년 12 월 31일)	+5. 제20 조제6항 관련 한 시정원 (존속기 한: 2022 년 12월 31일)
<u>총계</u>	<u>1</u>	<u>22</u>	+21
<u>일반직 계</u>	<u>1</u>	<u>22</u>	+21
<u>행정주사 · 공업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시설주사 · 방송통 신주사 ·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u>	<u><신 설></u>	<u>15</u>	+15

<u>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전산</u> <u>주사보 · 통계주사보 · 시설주사</u> <u>보 · 방송통신주사보</u> 또는 <u>공업연구사</u>	<u><신 설></u>	<u>7</u>	+7
---	-----------------------	----------	----